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 개념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확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부서폐지·신설 및 사무분장(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)
 - ▶ 부서폐지 : 환경복지과 폐지
 - ▶ 부서신설
 - 수요자 중심의 원-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구축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“주민생활지원과” 신설 및 사무분장(안 제3조제2항제5호)
 -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“환경과” 신설 및 사무분장(안 제3조제2항제7호)

※ 본청 환경복지과 폐지 ⇔ 본청 주민생활지원과, 환경과 신설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서승인 : 기구 및 정원 승인(총무과-12219, 2007.5.30)
- 라. 입법예고 : 2007.6.11-6.16(5일간), 제출의견 없음.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·민원봉사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주민생활지원과·문화관광과·환경과·산림과·건설과·지역도시과·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.

제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,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주민생활지원과

- 가. 보건·복지·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관광·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
- 나.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·조정에 관한 업무
- 다. 지역자원의 발굴·동원·연계·관리 및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
- 라.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
- 마.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,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
- 바.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
- 사. 여성·청소년·아동·보육·모부자가정
- 아. 출산장려와 관련한 업무

제3조제2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환경과

- 가. 환경정책 및 시설에 관한 업무
- 나. 폐기물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
- 다.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
- 라. 대기, 소음, 수질오염, 유역관리에 관한 업무
- 마. 야생 동·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관련 업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② 「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③ 「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평창군포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⑤ 「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하고, 제5항중 “환경복지과 사회복지분야 담당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⑥ 「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⑦ 「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“사회복지업무담당 주사”를 “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⑧ 「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“사회복지업무담당 주사”를 “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⑨ 「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3호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하고, 제8조제1항중 “환경복지과 사회복지업무 담당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 주사”로 한다.

⑩ 「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⑪ 「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⑫ 「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⑬ 「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하고, 제10조제4항제1호중 “환경복지과장”을 “환경과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과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기재된 실·과·소의 장의 사무는 신설된 실·과·소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<u>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·민원봉사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문화관광과·환경복지과·산림과·건설과·지역도시과·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</u></p> <p>②(생략)</p> <p>1.~4.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<u>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·민원봉사과·자치행정과·재무과·주민생활지원과·문화관광과·환경과·산림과·건설과·지역도시과·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주민생활지원과</p> <p>가. 보건·복지·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관광·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</p> <p>나.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·조정에 관한 업무</p> <p>다. 지역자원의 발굴·동원·연계·관리 및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</p> <p>라.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</p> <p>마.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,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</p> <p>바.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</p> <p>사. 여성·청소년·아동·보육·모부자가정</p> <p>아. 출산장려와 관련한 업무</p>

현행	개정안
<p>6. 환경복지과 가. 환경행정 및 시설에 관한 업무 나. 폐기물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다. 사회복지 및 주민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라. 여성 및 아동, 청소년 관련 업무 마.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규제</p> <p>5. 문화관광과 가.~라.(생략)</p> <p>〈신설〉 〈신설〉 〈신설〉 〈신설〉 〈신설〉 〈신설〉</p> <p>7. 산림과 가.~라.(생략)</p>	<p>6. 환경복지과 <삭제> <삭제> <삭제> <삭제> <삭제> <삭제></p> <p>6. 문화관광과(현행 5와 같음) 가.~라.(현행과 같음)</p> <p>7. 환경과 가. 환경정책 및 시설에 관한 업무 나. 폐기물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다.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라. 대기, 소음, 수질오염, 유역관리 에 관한 업무 마. 야생 동·식물 보호 및 유해야 생동물 구제 관련 업무</p> <p>8. 산림과(현행 7과 같음) 가.~라.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<u>8. 건설과</u> 가.~마.(생략)</p> <p><u>9. 지역도시과</u> 가.~사.(생략)</p> <p><u>10. 재난안전관리과</u> 가.~라.(생략)</p>	<p><u>9. 건설과(현행 8과 같음)</u> 가.~마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지역도시과(현행 9와 같음)</u> 가.~사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재난안전관리과(현행 10과 같음)</u> 가.~라.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※ 지방자치법

제102조(행정기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4.3.16, 1994.12.20, 2005.3.24>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1994.3.16>

②~⑤ (생략)

※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

제10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 및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(“이하생략”) <개정 1998.8.31>

② ~ ③ (생략)

④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 및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1998.8.31>

⑤ (생략)

⑥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8.31>